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7,892,112	7,436,763
일반회계	208,977,712	6,269,331
특별회계	38,914,400	1,167,432
공기업특별회계	11,977,488	359,32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977,488	359,325
기타특별회계	26,936,912	808,107
수질개선 특별회계	11,058,059	331,7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0,050	602
주택사업 특별회계	10,305,957	309,179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49,003	22,470
자활기금 특별회계	1,507,007	45,21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866,908	56,007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22,008	27,66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77,700	14,331
기반시설 특별회계	30,220	90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원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38,49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